##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(권성동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호 5992

발의연월일: 2024. 11. 28.

발 의 자:권성동・이만희・엄태영

김장겸 • 최은석 • 김상훈

김승수 · 한기호 · 김재섭

김성원 의원(10인)

###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위반행위 조사 시 조사목적, 조사기간 등이 기재된 문서를 발급하고 문서에 기재된 조사 기간 내에 조사를 종료하도록 하고 있으나 그 구체적인 기간 및 조사 기간의 연장에 관한 사유에 대해선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함.

이러한 구체적 규정의 미비로 인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자의적으로 조사 기간을 연장할 수 있게 됨에 따라 평균 사건 처리기간은 2022년 평균 597일로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조사대상자와 소비자는 사건처리 의 법적 불안정성 및 불확실성으로 인해 피해가 증대되고 있음.

이에 조사 기간 및 조사 기간의 연장에 대한 사유를 한정하여 법률에 규정함으로써 신속한 사건처리를 도모하고 조사대상자 및 소비자의 피해를 줄이고자 함(안 제82조).

#### 법률 제 호

###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제82조제2항 본문 중 "제81조제9항의 문서에 기재된 조사기간"을 "조사 개시일로부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"으로 하고, 같은 항단서를 삭제하며,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, 같은 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, 같은 조에 제4항부터 제7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1.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행위 및 부당한 지원행위 사건에 대한 조사: 9개월
- 2. 부당한 공동행위 사건에 대한 조사: 13개월
- 3. 그 밖의 불공정거래행위 사건에 대한 조사: 6개월
-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조사목적 달성을 위하여 추가적인 자료 확보가 필요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3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조사 기간을 최초 연장할 수 있으며 이후 공정거래위원회의 의결로 1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.
- ④ 조사공무원은 조사를 받는 사업자 또는 사업자 단체가 자료의 제출을 지연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조사를 진행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조사를 중지할 수 있다. 이 경우 그 중지기간은 제

2항 또는 제3항의 조사 기간 또는 조사 연장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.

- ⑤ 조사공무원은 제4항에 따른 조사의 중지기간 중에는 조사를 받는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에 대하여 장부등의 검사·조사 또는 그제출을 요구할 수 없다.
- ⑥ 조사공무원은 제4항에 따라 조사를 중지한 경우에는 그 중지사 유가 소멸하게 되면 즉시 조사를 재개하여야 한다.
- ⑦ 조사공무원은 제3항에 따라 조사기간을 연장하는 경우 및 제4항 또는 제6항에 따라 조사를 중지 또는 재개하는 경우 해당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에 그 사유와 조사기간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 다.

### 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 제2조(조사기간에 관한 적용례) 제82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조사가 개시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.

# 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		
제82조(조사시간 및 조사기간) ①	제82조(조사시간 및 조사기간) ①		
(생 략)	(현행과 같음)		
② 조사공무원은 제81조제9항	②		
의 문서에 기재된 조사기간 내	일로부터 다음 각 호의 구분에		
에 조사를 종료하여야 한다. <u>다</u>	따른 기간		
만, 조사기간 내에 조사목적 달	<u>&lt;단서 삭제&gt;</u>		
성을 위한 충분한 조사가 이루			
어지지 못한 경우에는 조사를			
받는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			
의 업무 부담을 최소화할 수			
있는 범위에서 조사기간을 연			
장할 수 있다.			
<u>&lt;신 설&gt;</u>	1.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행위		
	및 부당한 지원행위 사건에		
	대한 조사: 9개월		
<u>&lt;신 설&gt;</u>	2. 부당한 공동행위 사건에 대		
	한 조사: 13개월		
<u>&lt;신 설&gt;</u>	3. 그 밖의 불공정거래행위 사		
	건에 대한 조사: 6개월		
③ 제2항 단서에 따라 조사기	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조사목		
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해당	적 달성을 위하여 추가적인 자		
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에 연	료 확보가 필요한 경우 등 대		
장된 조사기간이 명시된 공문	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3		

서를 발급하여야 한다.

<신 설>

<신 설>

<신 설>

<신 설>

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조사 기 간을 최초 연장할 수 있으며 이후 공정거래위원회의 의결로 1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.

⑤ 조사공무원은 제4항에 따른 조사의 중지기간 중에는 조사 를 받는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 체에 대하여 장부등의 검사·조 사 또는 그 제출을 요구할 수 없다.

⑥ 조사공무원은 제4항에 따라 조사를 중지한 경우에는 그 중 지사유가 소멸하게 되면 즉시 조사를 재개하여야 한다.

⑦ 조사공무원은 제3항에 따라

조사기간을 연장하는 경우 및 제4항 또는 제6항에 따라 조사를 중지 또는 재개하는 경우해당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에 그 사유와 조사기간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.